**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머 리 말**

본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은 **㈜TCC스틸**의 모든 임직원들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와 연관된 공정거래 법규들을 사전에 스스로 확인하고 준수하여 회사와 임직원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공정거래 이념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회사와 연관된 공정거래 관련 법규들의 내용을 총 망라하여 정리한 회사 공정거래 자율준수의 교과서이자 지침서입니다.

회사의 모든 임직원분들은 업무 수행 시 사전에 본 편람을 활용하시어 해당 업무가 공정 거래 법규 저촉 사항은 없는지 사전에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일업무 수행 시 공정거래 법규를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시는 경우 본 편람을 참고하시되, 상세 업무 추진은 반드시 회사 공정거래 담당부서와 협의하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목 차

[**I.** **임직원 공정거래 자율준수 행동 가이드** 1](#_Toc132733414)

[**1.** **기본 원칙 – 임직원의 준법의무 및 실천** 1](#_Toc132733415)

[**2.** **공정거래법 자율준수** 2](#_Toc132733416)

[**가.**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행동지침** 2](#_Toc132733417)

[**나.** **일반 불공정 거래행위 행동 지침** 4](#_Toc132733418)

[**다.** **부당지원 행위 행동 지침** 7](#_Toc132733419)

[**라.** **하도급법 행동지침** 9](#_Toc132733420)

[**마.** **영업비밀 보호∙침해 예방 행동지침** 11](#_Toc132733421)

[**II.** **공정거래법규 주요 내용** 13](#_Toc132733422)

[**1.** **공정거래법 –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13](#_Toc132733423)

[**가.** **개념** 13](#_Toc132733424)

[**나.** **규제이유** 13](#_Toc132733425)

[**다.** **세부 유형** 14](#_Toc132733426)

[**2.** **공정거래법 – 일반 불공정거래 행위** 16](#_Toc132733427)

[**가.** **개념** 16](#_Toc132733428)

[**나.** **세부 유형** 17](#_Toc132733429)

[**3.** **공정거래법 – 부당지원 행위** 19](#_Toc132733430)

[**가.** **개념** 19](#_Toc132733431)

[**나.** **세부 유형** 19](#_Toc132733432)

[**4.** **하도급법** 21](#_Toc132733433)

[**가.** **개념** 21](#_Toc132733434)

[**나.** **세부 유형** 22](#_Toc132733435)

[**5.** **부정경쟁방지법** 24](#_Toc132733436)

[**가.** **개념** 24](#_Toc132733437)

[**나.** **세부 유형** 24](#_Toc132733438)

[**6.** **상생협력법** 26](#_Toc132733439)

[**가.** **개념** 26](#_Toc132733440)

[**나.** **세부 유형** 26](#_Toc132733441)

[**III.** **공정거래 체크리스트** 29](#_Toc132733442)

[**1.** **머리말** 29](#_Toc132733443)

[**2.** **공정거래법 체크리스트** 31](#_Toc132733444)

[**가.** **부당공동 행위(일반) 분야 자율점검** 31](#_Toc132733445)

[**나.** **부당공동 행위(담합)분야 자율점검** 33](#_Toc132733446)

[**다.** **공정위에 담합행위 신고 시의 위반행위 사전점검표(공정위 사건절차 규칙)** 35](#_Toc132733447)

[**라.** **부당공동 행위(담합) 분야 자율점검** 39](#_Toc132733448)

[**마.** **부당공동 행위(담합) 분야 자율점검 – 거래 개시 단계** 41](#_Toc132733449)

[**바.** **부당공동 행위(담합) 분야 자율점검 – 거래 계속 단계** 43](#_Toc132733450)

[**사.** **부당공동 행위(담합) 분야 자율점검 – 거래 종료 단계** 46](#_Toc132733451)

[**아.** **부당지원 행위 분야 자율점검** 47](#_Toc132733452)

[**3.** **하도급법 체크리스트** 50](#_Toc132733453)

[**가.** **거래개시 이전 단계** 50](#_Toc132733454)

[**나.** **계약 체결 단계** 50](#_Toc132733455)

[**다.** **계약 수행 단계** 50](#_Toc132733456)

[**라.** **하도급대금 지급 단계** 50](#_Toc132733457)

[**마.** **계약 종료 단계** 51](#_Toc132733458)

[**바.** **기타 – 분쟁 발생 시** 51](#_Toc132733459)

[**4.** **부정경쟁방지법 체크리스트** 51](#_Toc132733460)

[**가.** **영업비밀 침해 행위** 51](#_Toc132733461)

[**나.** **영업비밀의 보호** 51](#_Toc132733462)

[**5.** **상생협력법 체크리스트** 52](#_Toc132733463)

# **임직원 공정거래 자율준수 행동 가이드**

1. **기본 원칙 – 임직원의 준법의무 및 실천**

㈜TCC스틸의 모든 임직원은 아래 CP 운영기준 제13조를 준수하고 이에 따라 행동하여야 함.

|  |
| --- |
| **CP 운영기준 제13조 임직원의 자율준수**1. 임직원은 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와 관련된 공정거래 관련 법규의 준수 및 회사의 CP규정, 사규 등 각종 지침 및 자율준수편람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임직원은 고객 및 협력업체 등에 대한 공정거래 자율준수를 실천하며, 전파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3. 임직원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의 위반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시, 자율준수운영팀에 제보 또는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4. 임직원은 자율준수프로그램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5. 임직원은 업무수행과정에서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행위 발견 시 지체없이 회사에 제보하여야 한다.
 |

1. **공정거래법 자율준수**
2.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행동지침**
* 가격 등을 포함한 거래조건이나 이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경쟁사에 요구, 제공, 교환하지 않을 것
* 경쟁사로부터 가격이나 거래조건에 대한 문의 또는 요청이 있을 경우 제공이 불가능함을 밝히고 이를 기록으로 남겨둘 것
* 상대방 또는 모임, 교류회 등으로부터 담합 요청 또는 권유가 있을 경우 이를 명확하게 거절하고, 향후 해당 상대방 또는 모임 등의 접촉은 자제할 것
* 경쟁사 관련 정보는 적법하게 입수하여야 하며, 입수경위와 출처를 명확하게 기록할 것
* 입찰에 참여하려 하는 경우, 실적, 대상, 물건 등에 관한 수주예정사의 선정과 관련한 정보를 입찰 참가가 예상되는 다른 사업자와 교환하지 말 것
*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입찰에 관한 발주 수량, 비율 등을 경정하지 말 것
* 입찰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수준이나 동향에 관한 정보를 당해 입찰에 참가하려고 하는 사업자간 정보교환을 하거나, 동종업체간 정보수집 또는 제공, 정보교환 촉진 불가
* 동일 입찰에 참여하는 다른 사업자의 입찰 관련 서류를 대신 작성해 주거나 전달해 주지 말 것
* 당사가 낙찰받은 사업 건과 관련하여, 해당 입찰에 참여하였던 다른 사업자를 당사의 하도급업체로 선정하는 행위는 담합으로 의심받을 소지가 크므로 지양. 단, 반드시 해당 업체 소싱이 필요한 경우는 법무부서 검토를 거친 후 해당 사업 건 발주자로부터 서면 승낙을 받을 것
*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 달라는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단호히 거절할 것
* 입찰 관련 회사 내부 자료, 이메일 등에 담합 사실이 없음에도 외부에서 오해할 만한 표현을 사용하지 말 것(업체 사전 협의 완료, 협력 또는 협조 강화, 당사 지원 예정 등)
* 다른 사업자와 합의 · 협의 등을 통해 입찰가격을 정하는 행위, 낙찰 예정자 또는 수주 물량을 결정하는 행위는 절대로 불가함을 명심할 것.
1. **일반 불공정 거래행위 행동 지침**
* 당사와 거래를 원하는 업체가 있을 경우 해당 업체에 거래 개시에 대한 대가로서 해당 거래와 무관한 부당행위를 요구하지 말 것
* 상기 부당행위 요구에 업체가 응하지 않는다고 하여 거래 개시를 거절하지 말 것

☞ 상기 부당행위에는 당사가 지정하는 제3자의 물품, 용역을 의무적으로 구입하게 하는 행위, 금품 또는 향응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 있을 수 있음

* 거래 대상 업체의 선정 또는 거래 거절은 반드시 회사 내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할 것
* 동일한 상품·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비계열회사에 현저하게 불리한 가격 조건을 설정하지 말 것
*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사업자만을 거래조건, 서비스 내용 등을 차별하여 거래하지 말 것
* 고객이 당사 서비스, 제품 등을 구입·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고객 또는 고객 담당자에 불법적 금품 또는 향응(리베이트)을 제공하지 말 것
* 고객에게 제공하는 당사 서비스, 제품 관련 정보는 항상 진실된 정보만을 제공하여야 하고, 고객을 유인하기 위하여 허위·과장된 정보를 고객에게 전달하여서는 아니됨
* 고객이 당사와 거래하게 하기 위하여 경쟁사 사업활동을 방해·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 당사 용역, 서비스 제공을 조건으로 고객에게 불필요한 기타 용역, 서비스 등을 구매하도록 하지 말 것(끼워팔기 금지)
* 당사의 업계 지배력 강화 또는 신규 사업자 진입 저지를 위해 물품 · 용역 등을 현저히 저가로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 협력업체 거래 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업체가 달성할 수 없는 조건을 내세우고 업체가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것을 빌미로 거래물량 축소, 협력업체 탈락 등의 불이익을 주지 말 것
* 특정 사업을 위하여 경쟁자 핵심인력을 과다한 이익을 제공하는 등의 방식으로 빼오는 행위를 하지 말 것
* 부당하게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계약조건(업체 귀책 시 계약금액 무조건 전액 환수 등)을 설정하지 말 것
* 업체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약 내용과 다르게 그 내용, 품목, 가격, 요금 등에 관하여 당사의 지도를 받거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의 부당한 경영 간섭 행위를 하지 말 것
* 당사의 제품, 서비스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지역이나 상대방에 한하여 거래하지 말 것
* 사업 수행 시 거래 상대방의 기술을 무단으로 이용하지 말 것
* 당사와의 기존 거래 관계를 종료하고 거래처를 다른 회사로 변경하려고 하는 업체에게 정당한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기존 재고를 일방적으로 전량 반품 또는 담보·보증보험 등을 해제, 반환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거래처 이전을 방해하지 말 것
* 업체가 당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거나 경쟁사업자의 물품 등을 취급한다는 이유로 업체에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래 종료 등 불이익을 주지 말 것
* 업체의 당사에 대한 거래 의존도가 매우 높음을 이유로 해당 업체에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합리적인 이유없이 거래를 거절하는 등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지 말 것
1. **부당지원 행위 행동 지침**
* 공정거래법상 ‘일반 부당지원 행위(상당한 규모·유리한 조건의 거래, 통행세 거래)’ 금지 규정은 당사와 계열사간 거래뿐만 아니라, 당사와 비계열사간 거래에도 적용되는 규정임을 명심할 것
* 계열사와 내부거래를 추진하고자 할 경우(수의계약, 경쟁입찰 모두 포함)시 회사 규정지침 등에 따라 사전에 내부거래 심의를 거쳐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심의 받을 것
*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행위는 그러한 부당지원을 받은 회사, 부당지원을 한 회사 모두 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유의할 것
* 계열사인 고객이 계약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업무를 그에 대한 대가 지급없이 수행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이는 공정거래법상 금지되는 부당지원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음을 알린 후 추가업무에 대한 정당한 변경계약 체결 후 이를 수행할 것
* 역할이 없는 회사(계열사, 비계열사 포함)을 거래 단계에 추가시키거나, 그 역할에 비해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대가를 지급하지 말 것
* 특별한 역할 없이 거래 단계에 끼어드는 행위, 역할에 비해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대가를 받는 행위를 하지 말 것
* 계열사와의 거래라 하여 상호 체결한 계약 내용상의 상대방 책임을 면제하는 행위, 계약 대금 지급 기한을 연장하는 행위 등을 통해 상대방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행위 또한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므로, 계열사간 거래 시에도 상호 체결한 계약의 내용을 철저히 준수할 것
* 계열사와 내부거래 시 그 가격에 대해 정상가격과의 비교절차, 보안성·효율성·긴급성 등의 검토 등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는 절차를 거칠 것
* 계열사에 대한 지원 행위가 그 요건상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지원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일반 부당지원 행위’에는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그러한 부당지원 행위를 하지 말 것
1. **하도급법 행동지침**
* 하도급법은 기본적으로 당사와 중소기업인 수급사업자간의 하도급거래에 적용되는 규정이나, 대금 지급, 보복행위 금지 등 일부 규정은 당사/중견기업간 거래에도 적용된다는 점 유의
* 업체가 중소·중견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무부서에 문의하여 확인받을 것
* 하도급 계약이 체결완료되기 전에는 절대로 업체에 업무를 지시하지 말 것
* 공정위 표준계약서가 아닌 양식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계약서에 대해 반드시 법무부서 사전 검토를 거쳐 하도급법 위반소지(부당특약 등)가 있는지를 확인할 것
* 선급금 및 하도급대금은 하도급법상 규정에 맞게 지급할 것(15 일·60 일 이내, 현금비율 유지)
* 하도급법상 대금 지급기한 초과 시 내부 프로세스에 따라 즉시 보고 후 업체에 하도급법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
* 정당한 사유 없이 업체가 납품한 물건·용역 등의 수령·검수 요청을 거절·반품하지 말고, 거절 등에 대한 정당 사유가 있는 경우 공문, 검수 미통과 사유서 등으로 명확하게 증빙을 남길 것
* 당초 정한 하도급 금액을 감액하거나 업무를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는 경우 반드시 합의서 등 서면으로 그 상세 내용을 업체에 알리고, 그로 인해 업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할 것
* 부당하게 업체에 금전, 물품, 용역 등을 포함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지 말 것
* 기술자료는 회사 내 기술자료 요구 프로세스에 따라 정당하게 요구서를 발급하여 요구할 것
* 업체로부터 수령한 기술자료는 해당 요구서, 비밀유지계약 내용에 따라 유용·유출하지 말 것
* 업체의 하도급대금 조정 요청이 있을 경우 하도급법 규정에 따라 성실히 이에 응할 것
* 당해 거래와 관련한 업무 연락을 하는 것 외에 부당하게 업체 경영에 간섭하지 말 것
* 하도급법상 예외 사유(그 특성상 검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업무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검사 결과는 10 일 이내에 통지할 것
1. **영업비밀 보호∙침해 예방 행동지침**
* 타사 영업비밀로 의심되는 자료를 무분별하게 수집하지 말 것
* 수령한 타사 자료를 NDA등에 따른 공유·사용 권한 확인 없이 사내에 공유하지 말 것
* 사내 보고 시 그러한 사실이 없음에도 타사 중요 정보를 수집하였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말 것
* 타사 자료를 수집, 사용, 폐기하는 방법과 관련하여 불분명한 사안이 존재할 경우 이를 개인이 임의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법무, 보안부서 등 유관부서와 협의할 것
* 타사 영업비밀이 유입된 정황 발견 시 상대방에게 전화나 문자, 이메일로 답변하는 등 부서별 독자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법무, 보안부서 등 유관부서와 협의하여 이에 대응할 것
* 경쟁업체 영업비밀을 취득할 의도로 경쟁업체에서 전직한 인력을 통해 그 인력의 기존 팀원 채용을 유인하지 말 것
* 경쟁업체 직원 상당수에 대해 동시에 전직할 것을 권유·유도하지 말 것
* 경력직 사원에게 종전 근무회사로부터 습득한 기술상, 경영상 정보 등 종전 회사의 영업비밀 자료를 당사에 제공할 것을 요구하지 말 것
* 경력직 사원이 종전 회사로부터 습득한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물품(PC, 저장매체 등)은 회사 내에 반입하지 말도록 할 것
* 상호간에 NDA 를 체결하기 전까지는 제3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요구하지 말 것
* 업무 편의를 위하여 중요 정보·자료를 취급하는 임직원에게 필요 이상의 권한을 부여하거나, 정보 등의 취급 인력을 무분별하게 확대하지 말 것
* 신규로 생성되거나 취득한 정보·자료를 회사 규정에 따른 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하지 말 것
* 직원 퇴사 시 반드시 영업비밀 유출 방지를 위한 회사 내부 검증 절차를 거칠 것(PC· 정보매체 반납 확인, 중요 자료 반납 · 폐기 확인 등)

# **공정거래법규 주요 내용**

1. **공정거래법 –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2. **개념**

부당한 공동행위란, 상호 간의 경쟁을 회피하기 위하여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 인상 또는 시장분할이나 출고조절 등의 내용을 합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함. 통상 ‘카르텔’, ‘담합’ 또는 ‘짬짜미’로 불림

1. **규제이유**

카르텔은 경제전반에 걸쳐 많은 폐해를 유발하여 ‘시장경제의 암’으로 비유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경제 전반에 부작용을 발생

* 기업의 신기술 신상품 개발 유인 감소
* 소비자에 높은 가격으로 낮은 품질의 상품을 선택권 없이 구입하도록 강제
* 국가경제 전체적으로는 기술혁신 침체로 잠재 생산능력의 증가를 저해

※ OECD·선진 경쟁당국들은 카르텔이 최소 10% 정도의 가격인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추산

1. **세부 유형**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주요국에서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규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법에서 부당한 공동행위를 규제하고 있음

|  |
| --- |
| **공정거래법제40조(부당한공동행위의금지)**①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또는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

1. **가격의 결정, 유지∙변경**
*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가격결정 또는 유지･변경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는 경우

예) 유사물품 제조 업체들이 수차례에 걸쳐 공장도 가격을 합의하여 결정하는 경우 등

1. **상품의 거래 및 대금지급 등 거래조건 설정**
* 상품(용역)의 품질, 거래의 장소, 거래의 방법, 운송조건 등과 같이 상품 용역 거래와 관련된 조건 또는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을 정하는 행위

예) 사업자들이 서비스 차원에서 실시하던 무료 상품 제공을 합의하에 일시 중단한 행위 등

1. **기타 유형**
*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
*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 제한 시장분할
* 설비의 신･증설 또는 장비도입 제한
* 상품의 종류･규격 제한
* 영업의 주요 부문 공동관리
* 입찰담합
*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
* 정보교환 담합
1. **공정거래법 – 일반 불공정거래 행위**
2. **개념**

불공정거래 행위란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공정하지 않거나 정당하지 못한 방법 등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행위를 말함

이에는 사업자간 경쟁 수단이나 방법이 불공정한 경우는 물론 거래 내용 조건이 부당하거나 불공정한 경우 또는 거래를 위한 교섭 · 정보제공에 있어서 상대방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까지 포함

|  |
| --- |
| **공정거래법 제45조 불공정거래 행위의 금지**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2. 부당하게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3.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4.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5.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6.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7.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8.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10. 그 밖의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

1. **세부 유형**
2. **거래 거절** : 부당하게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거래상대방과의 거래를 중단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특정사업자와의 거래를 중단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3. **차별적 취급** :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가격차별, 거래조건차별,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집단적 차별 등)
4. **경쟁사업자 배제** : 경쟁자 배제를 위해 정상적 경쟁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상품 또는 용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공급원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 또는 통상 거래가격에 비해 부당하게 높은 가격으로 구입하는 행위
5. **부당한 고객 유인** : 과도한 이익 제공, 계약성립 저지, 계약불이행의 유인 등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본인 상품 유치·판매를 위한 리베이트 제공 등)
6. **거래 강제** : 거래 상대방 또는 자사 직원 등으로 하여금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자의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 판매 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끼워팔기(상품 구입 시 구매자 의사 관계없이 타 상품도 구매 강제) 등)
7. **거래상 지위 남용** :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각종 불이익을

부과하는 행위

1. **구속조건부 거래** : 거래 상대방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대리점에 경쟁사 제품 취급을 금지시키고 위반 시 위약금 부과 등)
2. **사업활동 방해** :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경쟁 사업자 근로자의 업무 장소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 등)
3. **공정거래법 – 부당지원 행위**
4. **개념**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가지급금ㆍ대여금ㆍ인력ㆍ부동산ㆍ유가증권ㆍ상품ㆍ용역ㆍ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또는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ㆍ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를 통해 해당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부당한 지원을 제공하는 자, 제공받는 자 모두 공정거래법상 처벌 대상에 해당.

1. **세부 유형**
2. **부당지원 행위**
* 부당한 자금지원

예) 계열 금융사가 계열사의 약정 연체이자율을 받지 않고 비계열사 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연체이자를 수령하거나, 상품 용역 거래와 무관하게 선급금 명목으로 계열사에 무이자 또는 저리로 자금을 제공한 행위

* 부당한 자산·상품 등 지원

예) 계열금융사가 계열사 발행 기업어음을 비계열사가 매입한 할인율보다 낮은 할인율로 매입하거나, 계열사 부동산 임차 시 고가의 임차료를 지급한 행위

* 부당한 인력지원

예) 업무지원 위해 인력 제공 후 인건비는 계열사가 부담한 경우, 인력파견계약을 체결하고 인력을 제공하면서 퇴직 충당금 등 인건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회수한 행위

1. **통행세 거래 행위**

예) 특정 상품·용역 사업 경험이 없는 계열사를 거래 단계에 추가하여 동 계열사를 통해 해당 상품·용역을 구입하면서, 계열사에 역할에 비해 과도한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

1. **하도급법**
2. **개념**

하도급거래란, 기업 원사업자 이 자신의 생산활동의 일부를 다른 기업 수급사업자 에게 위탁하고, 위탁받은 기업(수급사업자)은 위탁받은 부분을 생산하여 위탁한 기업 원사업자에게 납품하고 대가를 수령하는 거래

본 법은 하도급 거래에 해당하는 거래(기성품의 단순 매매 등 제외)에 관하여, 당사와 거래하는 중소/중견기업(중견기업은 대금 등 일부 규정만 적용)과의 관계에 적용됨

|  |
| --- |
| **하도급법 제2조 (정의)**①이 법에서 “하도급 거래”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가공위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수리위탁ㆍ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ㆍ수리위탁ㆍ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 , 그 위탁(이하 “제조등의 위탁”이라 한다)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을 제조ㆍ수리ㆍ시공하거나 용역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이하 “납품등”이라 한다)하고 그 대가(이하 “하도급대금”이라 한다)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③이 법에서 “수급사업자”란 제2항 각 호에 따른 원사업자로부터 제조 등의 위탁을받은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

1. **세부 유형**
2. **원사업자 의무 사항**
* 서면교부 및 보존의무 : 수급사업자와의 계약체결·변경 시 관련 사항을 사전에 서면으로 교부하고 이를 보존할 의무
* 하도급대금 등 지급의무 : 납품 후 60일 또는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받은 후 15일 내에 하도급대금/선급금/관세 등의 환급금을 지급하고, 기일을 넘기거나, 어음으로 지급할 경우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등을 지급할 의무
* 기타 의무사항 : 내국신용장 개설, 검사 및 검사결과 통지, 건설공사 대금지급 보증,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협의 등
1. **원사업자 금지사항**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 부당하게 통상 지급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금지
* 부당한 위탁취소, 수령거부, 반품 금지 : 수급사업자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부당하게 위탁을 취소하고 수령을 거부하거나 반품하는 행위를 금지
* 부당감액 금지 :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외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금지
* 부당한 대물변제 금지 :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 금지
* 기술자료 요구 금지 : 기술자료 요구의 금지 정당한 사유 있을 경우 요구서면 발급
* 기술자료 유용 등 금지 : 수급사업자 기술자료 제공받은 목적 외 부당 유출·유용 불가
* 기타 금지사항 : 물품 등 구매강제, 물품구매대금 등 부당결제청구, 경제적 이익 부당요구, 부당한 경영간섭, 보복조치, 탈법행위 금지 등
1. **부정경쟁방지법**
2. **개념**

부정경쟁방지법이 보호하는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가치를 지닌 것으로 비밀로 관리된 생산·판매 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의미

1. **세부 유형**

다음의 행위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따라 처벌(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1. 절취 기망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 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하는 행위
2.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3.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4.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5. 영업비밀이 위 ④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6.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이 위 ④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7. **상생협력법**
8. **개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해소하여 동반성장을 달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된 법률로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위수탁거래에 적용

1. **세부 유형**
2. **약정서, 수령증 발급**
* 위탁 시 할 때에는 즉시 그 위탁의 내용, 납품대금의 금액, 대금 지급 방법, 지급기일, 검사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약정서 발급
* 물품 수령 시 검사 여부에 관계없이 즉시 물품 수령증을 발급하여야 함
1. **비밀유지계약 체결**
* 기술자료 제공받는 경우 제공 목적 및 범위, 비밀유지의무 내용,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는 기술자료 비밀유지계약을 서면으로 체결
1. **납품대금 지급**
* 검사 무관하게 대금 지급일을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최단기간으로 규정
* 수탁기업은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 받은 후 공급원가 변동으로 납품대금 조정 불가피한 경우 위탁기업에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1. **검사 및 불합격 통보 의무**
* 위탁기업은 객관/타당한 검사기준을 정해 수탁기업 납품 물품을 신속히 검사하고, 검사 불합격한 물품에 대해서는 불합격 사유를 문서로 통보
1. **납품대금 결정**
* 수탁기업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수령을 거부하거나 납품대금 감액 불가
* 수탁기업이 납품하는 물품 등과 같은 종류이거나 유사한 물품 등에 대하여 통상 지급 대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납품대금을 정해서는 안됨
1. **발주**
*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물량을 통상 보다 현저히 감소·발주 중단불가
* 위탁 의뢰 후 제조된 물품등에 대한 발주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 불가
1. **기술자료**
*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해서는 안됨
* 기술자료의 임치를 요구한 수탁기업에 불이익을 줘서는 안됨
* 수탁기업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유용하거나 유출할 수 없음

# **공정거래 체크리스트**

1. **머리말**

본 장의 체크리스트는 임직원이 회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스스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회사에 발생 가능한 법규 위반 Risk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관련 업무를 수행하시는 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본 장의 체크리스트를 적극 활용하시어 본인의 업무가 공정거래 관련 법규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지 사전 사후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해당 체크리스트는 임직원의 자율점검을 위한 기본적인 Check Tool이며 그 결과가 곧 관련 사안에 대한 최종적인 법률적 판단 결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개별 사안에 대한 정확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여부는 법무부서에 문의하시어 최종적인 법률 검토 의견을 제공받아 처리 바랍니다.

현재 본 편람에서 제공하고 있는 체크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정거래법 체크리스트
* 하도급법 체크리스트
* 영업비밀 보호 체크리스트
* 상생협력법 체크리스트
1. **공정거래법 체크리스트**
2. **부당공동 행위(일반) 분야 자율점검**

|  |  |
| --- | --- |
| **구분** | **점검항목** |
| **협회 등****참석** | * 동종업계협회, 사업자단체 등의 모임에 참석하고 있는 경우
* 해당 모임 중 가격, 생산량,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입찰가격 등 결정 관련 주제가 언급된 적이 있는가?
* 해당주제 언급 시 관련 협의 또는 합의가 진행되었는가?
* 협의, 합의가 진행되었다면, 이에 찬성하거나 의사표시를 한 적이 있는가?
 |
| **경쟁사****직접****접촉** | * 경쟁사와 정기/비정기적인 교류나 모임을 하고 있는 경우
* 모임 중 가격, 생산량, 거래지역/상대방, 입찰가격 등 결정 관련 주제로 협의/합의가 진행된 적이 있는가?
* 협의/합의가 있었다면 그러한 협의/합의 시 찬성하거나 의사표시 한 적이 있는가?
 |
| * 경쟁사와 만날 수밖에 없는 공식적인 회의 시 상호 협력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가격정보, 조건 등을 교환하고 기록을 유지하고 있는가?
 |
| * 구체적인 합의(서면, 구두, 명시적, 묵시적 합의를 모두 포함) 내용을 당사의 가격 등 결정에 반영한 적이 있는가?
 |
| * 원재료 공급업체(또는 협력업체)의 가격 인상 요청에 대해 경쟁사와 합의하여 가격 인상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경쟁사와 합의하여 가격 인상 폭을 정하거나, 또는 특정 업체로부터만 구매하기로 합의한 적이 있는가?
 |
|  | * 직접적인 교류 외의 방법(전화, 팩스, 이메일, 영상미팅 기타. 이하 ‘간접 접촉’)으로 경쟁사와 접촉한 적이 있는 경우
* 간접 접촉 시 가격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나 합의가 있었던 적이 있는가?
* 간접 접촉 시 주고받은 정보가 당사 가격결정에 반영된 적이 있는가?
 |
| **자료****점검** | * 당사 내부 문건(보고서 회의록 배포자료 등) 작성시 경쟁사와의 “협력”, “공동대응”, “정보공유”, “교류”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가?
 |
| * 공문, 이메일, 팩스 기타 방법으로 경쟁사와 주고받은 문건에 “가격 등” 결정을 위한 요청사항이나 협의내용이 포함된 적이 있는가?
 |
| * 오해를 살 수 있는 표현(가격협의, 공동대응, 정보공유, 교류 등)이 적힌 이메일, 수첩, 달력, 메모 등을 작성해 보관하고 있는가?
 |

1. **부당공동 행위(담합)분야 자율점검**

|  |  |
| --- | --- |
| **구분** | **점검항목** |
| **입찰가격** | *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최저입찰가격 등을 결정하거나 이에 응한 적이 있는가
 |
| * 타 사업자와 입찰가격을 협의하거나 관련 정보 교환 제공 통해 입찰가격을 결정한 적 있는가
 |
| * 입찰 참가 시 타 사업자 산출내역서를 복사 · 대신 작성해 주는 등 방법으로 입찰한 적이 있는가
 |
| *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예정가격 인상을 목적으로 예정금액보다 높은 수주금액을 정한 후 고의적으로 유찰시킨 적이 있는가
 |
| **낙찰****예정자 사전****결정** | * 수주예정자가 낙찰받도록 하기 위해 다른 입찰참가자와 공동으로 수주예정자보다 입찰가격을 높게 응찰하는 행위를 한 적이 있는가
 |
| * 개별 사업자의 지명회수, 수주실적 등을 정리해 낙찰예정자 선정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입찰 참가하려는 다른 사업자들에게 이에 협조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한 적이 있는가
 |
| * 타 업체에게 낙찰 협조 대가로 차기 사업발주시 낙찰의 협조, 금품지급 등의 이익을 주겠다고 약정하는 방법에 의해 낙찰자를 사전 결정하는 행위를 한 적이 있는가
 |
| * 입찰에 참가하려는 사업자에 대하여 수주예정자 결정에 따르도록 강요하고 협력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 입찰참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적이 있는가
 |
| * 특정 입찰에 대한 연고권 주장을 통해 특정 업체에 낙찰이 이루어지도록 하거나 이에 협조하는 행위를 한 적이 있는가
 |
| * 특정 업체와 사업을 교대로 수주하거나 다른 입찰참가업체들의 산출내역서를 대신 작성해 주며 입찰에 참가하게 하거나 입찰내역서를 첨부하지 않고 입찰에 참가해 특정업체의 낙찰을 밀어주는 행위를 한 적이 있는가
 |
| * 산출내역서를 전문적으로 작성하는 용역업체에 다른 사업자의 산출내역서 작성을 의뢰하고 이를 참여사업자에게 배분하는 행위를 한 적이 있는가
 |
| * 수주예정자 선정과 관련해 타 사업자와 공동으로 낙찰예정자를 결정한 뒤 이를 관련 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조를 요구하는 행위를 한 적이 있는가
 |
| * 낙찰자 선정 협조의 대가로 낙찰자에게 사례금·특별회비·부과금 등을 받은 적 있는가
 |

1. **공정위에 담합행위 신고 시의 위반행위 사전점검표(공정위 사건절차 규칙)**

|  |  |
| --- | --- |
| **공정거래법****관련 조항** | **위반사실** |
| **제40조 제1항 제1호****(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 *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를 다른 사업자와 합의하거나 타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공동으로 하도록 하는 행위
 |
| * 가격을 유지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다른 사업자와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공동으로 하도록 하는 행위
 |
| * 최고가격이나 최저가격 범위 설정을 다른 사업자와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공동으로 하도록 하는 행위
 |
| * 인상률, 할인율, 할증률, 이윤율 등과 같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결정ㆍ유지ㆍ변경하는 행위를 다른 사업자와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공동으로 하도록 하는 행위
 |
| **제40조 제1항 제2호****(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대가,**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 | * 위탁수수료, 출하장려금 등의 수준, 무료 상품 서비스 제공 여부, 특정 유형의 소비자에 대한 상품ㆍ서비스 공급방식, 운송조건 등과 같이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와 관련된 조건을 정하는 행위를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공동으로 하도록 하는 행위
 |
| * 대가(대금)의 지급 수단, 지급 방법, 지급 기간 등과 같이 대가(대금)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를 다른 사업자와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공동으로 하도록 하는 행위
 |
| **제40조 제1항 제3호****(상품의** **생산 · 출고 · 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 * 상품ㆍ용역의 거래에서 생산 · 판매 · 출고 · 거래량, 수송량 등을 일정한 수준 또는 비율로 제한하거나 사업자별 할당하는 행위를 다른 사업자와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공동으로 하도록 하는 행위
 |
| * 가동률, 가동시간, 원료구입 여부 또는 비율 등을 제한함으로써 생산ㆍ출고ㆍ수송을 제한하는 행위를 다른 사업자와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공동으로 하도록 하는 행위
 |
| **제40조 제1항 제4호****(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제한하는****행위)** | * 사업자별로 특정 지역에서는 거래하지 않도록 하거나 특정 지역에서만 거래하도록 하는 행위를 다른 사업자와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공동으로 하도록 하는 행위
 |
| * 사업자별로 특정 사업자와는 거래하지 않도록 하거나 특정 사업자와만 거래하도록 하는 행위를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공동으로 하도록 하는 행위
 |
| **제40조 제1항 제5호****(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 * 업계 전체 또는 개별 사업자별로 설비 총량 또는 신 증설 규모를 다른 사업자와 합의하여 정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공동으로 하도록 하는 행위
 |
| * 업계 전체 또는 개별 사업자별로 특정한 장비 도입을 제한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를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공동으로 하도록 하는 행위
 |
| **제40조 제1항 제6호****(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ㆍ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 * 특정종류 또는 규격의 상품 또는 용역을 생산 또는 거래하지 않도록 다른 사업자와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공동으로 하도록 하는 행위
 |
| * 사업자별로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 또는 규격 할당을 타 사업자와 합의하거나 타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공동으로 하도록 하는 행위
 |
| * 새로운 종류 또는 규격의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 공급을 제한할 것을 타 사업자와 합의하거나 타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공동으로 하도록 하는 행위
 |
| **제40 조 제1항 제7호****(영업의 주요부문을 공동으로 수행ㆍ관리하거나 수행ㆍ관리하기 위한 회사 등을 설립하는 행위)** | *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 판매, 거래, 원자재의 구매, 기타 영업의 주요 부분을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관리하는 행위
 |
| *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 판매, 거래, 원자재의 구매, 기타 영업의 주요 부분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관리하기 위해 회사 등을 설립하는 행위
 |
| **제40조 제항 제 8호****(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서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등을 제한하는 행위)** | * (입찰) 낙찰 예정자를 사전에 결정하고 그 사업자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투찰 여부나 투찰 가격 등을 결정하는 행위
 |
| * (경매) 경락예정자를 사전에 결정하고 그 사업자가 경락받을 수 있도록 투찰 여부나 투찰 가격 등을 결정하는 행위
 |
| * 입찰 또는 경매에서 낙찰 또는 경락받을 비율 등을 결정하는 행위
 |
| * 입찰 또는 경매에서 사전에 설계 또는 시공 방법을 결정하는 행위
 |
| * 그 밖에 입찰 또는 경매의 경쟁요소를 결정하는 행위
 |
| **제40조 제1항 제9호****(타 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ㆍ제한하거나 가격, 생산량, 원가, 출고량, 재고량 또는 판매량, 거래조건 또는 대금ㆍ대가의 지급조건 등의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 | *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가격, 생산량, 원가, 출고량, 판매량, 거래조건 등 경쟁상 민감한 정보를 알리는 행위
 |
| * 사업자단체(협회, 협동조합 등), 제3의 사업자 등 중간 매개자를 거쳐 경쟁상 민감한 정보를 경쟁사업자에게 전달하는 행위
 |

1. **부당공동 행위(담합) 분야 자율점검**

|  |  |
| --- | --- |
| **구분** | **점검항목** |
| **경쟁계약의****수의계약****의도** | * 타 사업자와 공동으로 당해 입찰을 수의계약으로 유도할 것을 합의하고 입찰참가자 모두 예정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의해 계속적으로 유찰시키거나 입찰참가를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행위를 한 적이 있는가
 |
| * 특정 사업자의 수주를 목적으로 몇몇 사업자와 공모하여 들러리 등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였다가 도중에 입찰을 포기하여 특정사업자 이외의 다른 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봉쇄하여 수의계약으로 유도하는 행위를 한 적이 있는가
 |
| * 타 사업자와 공동으로 객관적 기준없이 특정한 사업자를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부당업자 또는 불량업자로 구분하여 관련부서에 통보하거나 대외공표함으로써 입찰참여를 방해한 후 수의계약을 유도하는 행위를 한 적이 있는가
 |
| **수주물량 등 결정** | * 타 사업자와 공동으로 회합 등을 통해 수주물량을 결정하거나 입찰참가자간 수주물량 배분을 결정하는 행위를 한 적이 있는가
 |
| * 타 사업자들과 공동으로 수주물량 배분 등의 결정을 하면서 비협조적인 사업자에 대해 입찰참가 방해 또는 기타 불이익 제공 등의 차별적 취급을 하는 행위를 한 적 있는가
 |
| * 단독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물량에 대하여만 응찰하여 다른 사업자와의 공동 수주를 유도하는 행위를 한 적이 있는가
 |
| **경영간섭 등** | * 타 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전에 입찰참여자로 하여금 수주물량의 일부를 특정사업자에게 하도급 형태로 분할하는 조건이나 특정사업자로부터의 자재구입 사용조건 등을 정해 입찰에 참여하도록 한 적이 있는가
 |
| * 낙찰예정자로 하여금 계약금액의 일정률을 기부금이나 특별회비 등으로 납부하도록 하여 이익의 일부를 공동사용 또는 배분하도록 한 적이 있는가
 |
| **정보교환****담합** | * 다른 사업자와 정보를 주고받을 것을 합의하고 가격, 생산량, 원가 등의 경쟁상 민감한 정보를 알리는 행위(정보교환 행위)를 한 적이 있는가
 |
| * 정보교환 행위가 있는 경우, 가격 인상, 생산량 축소 등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목적으로 정보교환 행위를 하였는가
 |

1. **부당공동 행위(담합) 분야 자율점검 – 거래 개시 단계**

|  |  |
| --- | --- |
| **구분** | **점검항목** |
| **기타의****거래거절** | * 단독으로 자기와 거래하기 위해서 자신이 지정하는 사업자의 물품·용역을 구입할 것을 의무화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래개시를 거절하고 있는가
 |
| **가격·****거래조건****차별** | * 거래개시 과정에서 자신의 시장지위 강화를 위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낮은 가격 또는 유리한 거래조건을 설정함으로써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하고 있는가
 |
| **집단적****차별** | * 특정사업자와 거래를 개시함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 없이 그 사업자에 대해서만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 거래조건, 거래내용 등에 차별을 설정하고 있는가
 |
| **계열회사를****위한 차별** | * 자신의 계열회사 및 비계열회사와 동시에 거래를 개시하면서 비계열회사에 대하여 현저히 불리한 거래조건을 설정하고 있는가
 |
| **부당이익에****의한** **고객유인** | *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자신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할 경우에 정상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도한 리베이트를 지급 제의하고 있는가
 |
| **위계****의한****고객유인** | * 경쟁사업자에 대한 영업 품질 기술력 등에 관해 사실과 다른 허위 정보를 발주자에게 제공하여 당해 사업을 수주하고 있는가
 |
| **거래방해에****의한****고객유인** | * 경쟁사업자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경쟁사업자와 고객 사이에 계약이 성립되는 것을 저지하거나 해지되도록 유도하고 있는가
 |
| **끼워팔기** | * 거래상대방에게 인기 있는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조건으로 인기 없는 상품 용역을 함께 구입하도록 설정하고 있는가
 |
| **기타의 거래강제** | * 자신 또는 계열회사의 협력업체인 거래상대방과 거래를 개시함에 있어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불리한 거래조건을 제시하고 이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거래물량을 축소하거나 협력업체에서 탈락시킬 것을 고지하는 등 불이익을 제공하고 있는가
 |
| **배타조건부 거래** | * 자신이 해당 상품에 대한 구매력이 상당하고 경쟁 사업자는 대체 거래선 확보가 곤란한 상태에서 거래상대방에게 해당 상품을 구입하는 조건으로 경쟁사업자에 공급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는가
 |
| **인력의 부당 유인∙채용** | * 특정사업자와 거래를 개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쟁사업자의 핵심인력을 과다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제의를 하고 있는가
 |
| **기타의 사업 활동 방해** | * 거래상대방과 거래를 개시하면서 거래상대방의 특정시설을 다른 사업자들은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조건을 부과하고 있는가
 |

1. **부당공동 행위(담합) 분야 자율점검 – 거래 계속 단계**

|  |  |
| --- | --- |
| **구분** | **점검항목** |
| **공동의****거래거절** | * 자기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들과 공동으로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 사업자에 대한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수량 및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고 있는가
 |
| **기타의 거래강제** | * 자신 또는 계열회사의 협력업체인 거래상대방에게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불리한 거래조건을 제시하고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거래 물량을 축소하거나 협력업체에서 탈락시킬 것을 고지하는 등 불이익을 제공하고 있는가
 |
| **기타의 거래거절** | * 자기 또는 자기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업자와 독점적으로 거래하는 사업자와는 거래하면서 경쟁 사업자와도 거래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거래를 중단·제한하고 있는가
 |
| **가격∙****거래조건** **차별** | * 거래상대방 중 일부 사업자들에 대하여 할인율, 수수료, 거래조건 등에 있어서 유리한 취급을 하고 있는가
 |
| **집단적 차별** | * 다른 사업자들과 공동하여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가격이나 거래조건을 차별하는 계약내용으로 변경하거나 그러한 차별행위를 하고 있는가
 |
|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 * 계열사가 유리한 지위에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에게 원재료를 불리한 거래조건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그러한 조건으로 공급하고 있는가
 |
| **계속적** **부당염매** | * 당해 시장에서 경쟁자 및 신규진입을 시도하는 사업자를 퇴출 및 저지시킬 목적으로 제조원가에 미달하는 가격으로 계속하여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고 있는가
 |
| **일시적** **부당염매** | * 자신의 상품을 1회 또는 단기간(1주일 이내)에 걸쳐 제조원가나 매입원가를 하회하는 현저히 낮은 대가로 공급하고 있는가
 |
| **부당****고가매입** | * 경쟁사업자나 신규진입자의 사업에 필요한 상품이나 용역 및 필수적인 요소를 통상 거래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점하고 있는가
 |
| **부당 이익에 의한 고객 유인** | * 자신의 제품과 경쟁사업자의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업자에게 자신의 제품을 우선하여 판매하도록 음성적인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는가
 |
|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 * 자신의 제품과 경쟁사업자의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업자에게 경쟁사업자에 대한 근거없는 사실을 유포하여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고 있는가
 |
| **끼워팔기** | * 거래상대방에게 신제품을 판매하면서 구제품이나 재고품을 함께 구입하도록 계약을 변경하거나 그러한 구입을 강요하고 있는가
 |
| **구입강제** | * 계속적 거래관계인 판매업자에게 주문하지도 않은 상품을 임의로 공급하고 반품을 허용하지 않았는가
 |
| **이익제공****강요** | * 거래상대방에게 자신이 구입하는 물량의 일정비율만큼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는가
 |
| **불이익 제공** | * 거래상대방과 거래를 함에 있어서 원가계산상의 착오로 인한 경우에 사업자가 해당 계약금액을 무조건 환수 또는 감액할 수 있다는 조건을 설정하고 있는가
 |
| **경영간섭** | *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초 계약 내용과 달리 취급 품목 가격 요금 등에 관하여 지도를 하거나 자신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가
 |
| **배타조건부 거래** | * 거래상대방에게 해당 제품에 대한 수리 및 보수는 오직 자신과 거래하도록 요구하고 있는가
 |
| **거래 및** **거래상대방 제한** | * 사업자는 거래상대방에게 자신의 상품을 특정인이나 특정지역에 한하여 판매하도록 요구하고 있는가
 |
| **기술의** **부당이용** | * 거래상대방의 기술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거래상 대방의 생산이나 판매활동에 심각한 곤란을 초래하고 있는가
 |
| **인력 부당****유인∙채용** | * 거래상대방의 핵심인력을 과다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를 통해 채용함으로써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하고 있는가
 |
| **거래처****이전방해** | * 거래처 이전 의사를 밝힌 거래상대방에게 기존에 구입한 물량을 일방적으로 반품처리 하거나 담보 해제를 해주지 않는 등으로 거래처이전을 방해하고 있는가
 |
| **기타의****사업활동****방해** | * 거래상대방에게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에 대하여 근거 없는 비방 전단을 살포하고 있는가
 |

1. **부당공동 행위(담합) 분야 자율점검 – 거래 종료 단계**

|  |  |
| --- | --- |
| **구분** | **점검항목** |
| **기타의 거래거절** | * 자기의 제품과 경쟁사업자 제품을 모두 취급하는 거래상대방에게 경쟁사업자 제품을 취급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등 부당한 요구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지키지 않았음을 이유로 거래를 일방적으로 종료하고 있는가
 |
| **불이익 제공** | * 거래상대방에 대한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거래거절을 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고 있는가
 |
| * 거래상대방이 정당하게 거래종료를 요청함에도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부당한 조건을 제시하고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 거래종료를 거부할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가
 |

1. **부당지원 행위 분야 자율점검**

|  |  |
| --- | --- |
| **구분** | **점검항목** |
| **수의계약** **가능 여부** | * 해당 거래가 당사와 동일 기업집단 소속인 계열회사와의 거래인지
 |
| * 천재지변, 긴급한 행사, 원자재 가격 급등락 등 경쟁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입찰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인지
 |
|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약인지

(i) 특허, 실용신안권 등으로 보호되는 물품의 제조자와의 계약(ii) 해당 물품을 제조ㆍ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ㆍ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iii) 특정인의 토지ㆍ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재산을 임차 또는 특정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
| *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인지
 |
| * 거래금액이 1억 원 미만인 경우로서 계약의 목적 · 성질에 비추어 경쟁입찰을 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인지
 |
| * 기업집단의 이미지 통일 및 표준화 계획 또는 경영 정책상 통일성·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인지
 |
| * 입찰공고 후 입찰자가 1인이거나 참가자가 없어 재공고 입찰을 진행하였으나 재차 참여자가 1인이거나 없는 경우인지
 |
| * 다른 자와의 거래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비용절감, 판매량 증가, 품질개선, 기술개발 등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거나 다른 자와 거래할 경우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 또는 정보 등이 유출되어 경제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인지
 |
| **사업기회** **제공** | * 상대방 계열사에 영업권, 영업상 중요 자산, 자회사 주식 등을 양도하는 거래인지
 |
| * 제공 대상 사업기회가 당사가 직접 수행 시 상당한 이익이 될 수 있는 경우인지
 |
| * 당사가 해당 사업기회를 수행할 능력이 없는지
 |
| * 사업기회 제공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
| **가격의 적정성 여부** | * 해당 거래가격은 정상가격과 비교하였을 때 적정한 수준인지
* 정상가격 :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이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의한 가격

① 비교 가격 : 유사 상황에서 당사가 특수관계인 아닌 제3자와 거래 시 적용된 가격 혹은 제3자 간 거래에서 적용된 가격② 시장 가격 : 객관적인 시장가격(가격지수, Index, report 등)③ 평가 가격 : 감정평가를 통해 도출되는 가격④ 비교 견적가 : 타 업체로부터 제시 받은 견적 가격⑤ 기타 정상가격 : 기타 정상가격으로 제시할 수 있는 기준⑥ 계속거래시 전년비 계약금액 변동분·변동률 등 구체적 변동사유 |
| * 수의계약 건인 경우 거래 대상 계열사가 아닌 타 회사 견적을 통해 정상가격 여부를 확인·검토하는 절차를 거쳤는지
 |
| * 계열사간 거래가격이 공정거래법상 안전지대{정상가격과의 차이 7% 미만이고 연간 거래총액이 50억 원(상품·용역거래는 200억 원) 미만인 경우} 범위에 해당하는지
 |
| **효율성 존재 여부** | * 해당 계열사와의 거래 시 다른 자와의 거래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비용절감, 판매량 증가, 품질개선, 기술개발 등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는지
* 효율성 증대효과 예시

① 전후방 연관관계인 계열사간 상품생산에 필요한 부품소재를 공급하는 경우② 산업연관성이 높은 계열회사로부터 필수 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우③ 일부 사업을 전문화된 계열사에 전담시키고 이를 그 계회사와 거래하는 경우④ 인적, 물적으로 협업 체계가 이미 구축되어 있는 경우⑤ 전문지식과 인력보유, 대규모·연속사업의 일부 또는 계약이행 신뢰성 등을 고려하여 거래하는 경우 |
| **보안성 존재여부** | * 해당 계열사와 거래하지 않고 다른 자와 거래할 경우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 또는 정보 등이 유출되어 경제적으로 회복이 불가능한 피해를 초래 또는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인지
* 보안성 예시

①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 공장 연구개발시설 또는 통신기반시설 등 필수시설 구축ㆍ운영 핵심기술의 연구ㆍ개발ㆍ보유 등과 관련된 경우② 거래 과정에서 영업ㆍ판매ㆍ구매 등과 관련된 기밀 또는 고객의 개인정보 등 핵심적인 경영정보에 접근 가능한 경우 |
| **통행세 거래** | * 거래상 역할이 없거나 미미한 다른 회사(계열사 포함)를 거래단계에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하는 경우인지
 |
| * 다른 회사(계열사 포함)를 거래 단계에 추가 또는 거쳐서 거래하면서 거래상 역할 대비 과도한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인지
 |
| * 당사가 거래 단계에 추가되어 다른 회사(계열사 포함)와 거래 시 실질적이고도 충분한 역할을 확보하고 수행하는지
 |
| * 당사가 거래 단계에 추가되어 다른 회사(계열사 포함)와 거래 시 당사가 지급받는 대가는 실제 확보한 역할 대비 과도하거나 지나치게 낮지는 않은지
 |

1. **하도급법 체크리스트**
2. **거래개시 이전 단계**

|  |  |
| --- | --- |
| **구분** | **점검항목** |
| **하도급 거래 해당 여부** | * 해당 거래가 매입계약이고 거래 상대방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인지
 |
| * 해당 거래가 단순 상품 내지 상용품의 납품에 해당하는 거래인지
 |
| * 해당 거래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도급 거래인지
* (제조 하도급)물품제조·판매·수리업자 또는 건설업자가 자신의 업을 위한 물품(범용품, 상용품 제외)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수행하는 거래
* (용역 하도급)지식·정보성과물의 작성 또는 역무의 제공을 업으로 하는자(용역업자)가 자신의 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용역업자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거래
* (수리 하도급)수리업자가 다른 수리업자에게 수리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수행하는 거래
 |

1. **계약 체결 단계**

|  |  |
| --- | --- |
| **구분** | **점검항목** |
| **사전** **서면 발급** | * 업체가 업무를 개시하기 전 또는 당사가 업체에 업무를 지시하기 이전에 목적물의 내용, 하도급대금 및 대금지급방법과 지급기일 등 중요사항을 기재하고 양 당사자 기명날인을 완료한 계약서면이 발급되었는지
 |
| **부당특약** **설정 금지** | * 하도급 계약 체결 시 공정위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 체결하였는지
 |
| * 공정위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하도급 계약의 경우, 해당 계약서 내에 법령 등에 따라 당사가 부담할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것 등과 같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의 약정이 포함되어 있는지
 |
| **물품 등의 구매 강제** | * 목적물의 품질유지·개선 등 정당한 사유 외의 사유로 당사가 지정하는 물품·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을 수급사업자에게 매입 또는 사용하도록 요구하였는지
 |
| **건설하도급****지급 보증** | * 해당 하도급 거래가 건설 하도급인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공사대금 지급 보증이 되었는지
 |

1. **계약 수행 단계**

|  |  |
| --- | --- |
| **구분** | **점검항목** |
| **선급금의****지급** | * 당사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이 지급되었는지
 |
| **부당위탁****취소 /** **수령 거부** | * 위탁 발주 이후 이를 임의로 취소(계약해지, 발주취소)등 또는 변경(발주량 감축 등) 하거나, 수급사업자가 제조 등을 수행하여 납품한 위탁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연하였는지
 |
| **부당 결제 청구** | * 당사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제조 등의 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당사로부터 사게 한 사실이 있는지
 |
| * 귀사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지급기일 전에 물품 구매대금이나 장비 사용의 대가를 지급하게 하거나, 당사가 구입 또는 사용하거나 제3자에 공급하는 조건보다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가를 지급하게 한 사실이 있는지
 |
|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 * 수급사업자에게 귀사 또는 제3자를 위해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한 사실이 있는지
 |
| **기술 자료** | *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 요구한 경우 계약체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
| * 기술자료를 요구 시 요구 목적,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등을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사전 협의 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 양 당사자 기명날인 완료하였는지
 |
| * 기술자료 수령 전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수급사업자와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기술자료 보유 임직원 명단 등을 기재한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하였는지
 |
| **경영간섭** | * 하도급거래량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수급사업자 경영에 간섭하거나, 수급사업자에 정당한 사유 없는 기술자료 해외 수출 제한하였는지
 |
| * 기술자료 수출을 이유로 한 거래 제한하였는지
 |
| * 당사/당사 지정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구속·정당한 사유 없는 원가자료 등 경영상 정보 요구 등의 행위를 하였는지
 |
| **하도급 대금 조정** | *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 변동 등을 이유로 도급계약금액이 증액되고 추가비용이 발생하였을 때, 추가 증액 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이 증액되었는지
 |
| *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에 대하여 10일 안에 수급사업자와 협의를 개시하였는지
 |

1. **하도급대금 지급 단계**

|  |  |
| --- | --- |
| **구분** | **점검항목** |
| **하도급대금****지급** | * 하도급대금은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 인수일 용역위탁의 경우 용역 수행 마친 날, 납품 등이 잦아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정한 경우 그 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지급되었는지
 |
| *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대금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 그 지급기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이 지급되었는지
 |
| **지연이자 /** **어음수수료** **등 지급** | *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가 어음교부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되었는지
 |
| * 하도급대금이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또는 발주자로부터 대금 등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이 지나서 지급되는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지연이자가 지급되었는지
 |
| **부당한** **대물변제** | *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는 사정(당사 어음 또는 수표 부도, 은행 당좌거래 정지, 파산신청, 회생절차개시 등)이 없음에도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는지
 |

1. **계약 종료 단계**

|  |  |
| --- | --- |
| **구분** | **점검항목** |
| **검사결과** **통지** | * 납품 목적물에 대한 검사기준·방법을 서로 협의하여 정하고 목적물이 납품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납품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가 통지되었는지
 |
| **부당 반품** | *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목적물을 반품하였는지
 |
| **부당 감액** | *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제조 등을 위탁할 당시 정했던 하도급대금을 이후에 감액하여 지급하였는지
 |

1. **기타 – 분쟁 발생 시**

|  |  |
| --- | --- |
| **구분** | **점검항목** |
| **불이익** **제공 등** | *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조정신청 또는 조사 협조하였다는 이유로 수급사업자에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정지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하였거나 또는 우회적으로 하도급법 적용을 회피하려 하였는지
 |

1. **부정경쟁방지법 체크리스트**
2. **영업비밀 침해 행위**

|  |  |
| --- | --- |
| **구분** | **점검항목** |
| **취득** | * 부정한 방법으로 타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한 적이 있는가
 |
| * 경쟁사 영업비밀을 취득할 목적으로 경쟁사 임직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적이 있는가
 |
| **공개** | * 컨소시엄으로 알게 된 타사의 영업비밀을 제3자와 공유한 적이 있는가
 |
| * 협력사 기술 정보를 외부에 누설한 적이 있는가
 |
| * 협력사 기술 정보를 외부에 누설한 적이 있는가
 |
| * 제품의 전략화 계획 등 영업비밀을 협력사에 제공한 적이 있는가
 |
| **사용** | * 업무상 확보한 영업비밀을 회사의 사전승인 없이 학술목적으로 사용, 공개한 적이 있는가
 |
| * 제3자의 영업비밀 사용시 동의를 받지 않고 사용한 적이 있는가
 |
| * 경력자의 경우, 이전 회사에서 업무 자료 등을 재사용하여 업무에 활용한 적이 있는가
 |

1. **영업비밀의 보호**

|  |  |
| --- | --- |
| **구분** | **점검항목** |
| **비밀유지의무** | * 영업상 비밀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부정한 이익을 위해 그 영업비밀을 사용한 적이 있는가
 |
| **퇴직자 등** | * 퇴사자 또는 전배자 발생시 관련 영업비밀 인수인계 등 정해진 절차에 따른 조치에 따라 제대로 퇴사/전배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

1. **상생협력법 체크리스트**

|  |  |
| --- | --- |
| **구분** | **점검항목** |
| **계약 체결** | * 수탁기업에 대한 제조 등 위탁시 위탁의 주요 내용이 기재된 약정서를 발급했는가
 |
| * 수탁기업으로부터 기술자료를 제공받아야 하는 경우, 기술자료 및 비밀유지의무의 주요 내용이 기재된 비밀유지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했는가
 |
| * 납품 대금을 통상적인 경우보다 현저히 낮게 정하지는 않았는가
 |
| **거래 과정** | * 수탁기업이 제공한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는 않았는가
 |
| * 정당한 사유 없이 통상적인 수준보다 발주 물량을 현저히 감소시키거나 중단하지는 않았는가
 |
| **대금지급** **및** **검수** | * 수탁기업 납품에 대해 객관적이고 타당한 검사기준을 바탕으로 신속히 검수하였는가
 |
| * 수탁기업의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물품 등의 수령을 거부하지는 않았는가
 |